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6.16)

『2023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옥)

「2023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3년 5월 2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2차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I. 제안이유

2023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

II.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기금

대회 유치 및 개최를 통하여 평창군 체육발전 도모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체육지원 사업비로 편성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고향사랑기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에 따라 모금·접수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평창군 고향사랑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함.

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라. 식품진흥기금

2022년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마. 기금운용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기 금 명	계획액	기정계획액	비교증감
합 계(8건)	26,222,059	25,982,059	240,000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739,688	13,739,688	-
평창군체육진흥기금	2,978,030	2,978,030	-
평창군자활기금	503,005	503,005	-
평창군고향사랑기금	240,000	-	240,000
평창군재난관리기금	1,784,928	1,784,928	-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179,016	179,016	-
평창군식품진흥기금	162,372	162,372	-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6,635,020	6,635,020	-

Ⅲ. 기금변경 개요

□ 변경기금 조성규모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과 개별법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기금으로 2023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기정대비 183백만원이 감소한 24,451백만원임.

[단위:천원]

기 금 명	2022년도말 조성액 [㉠]	2023년 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	당초대비 증감
		수입 [㉢]	지출 [㉣]		
합 계(8건)	25,808,891	4,913,176	6,270,638	24,451,429	△182,80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630,423	359,274	2,306,405	13,683,292	
통 합 계 정	4,630,423	29,267	2,306,405	2,353,285	
재 정 안 정 화 계 정	11,000,000	330,007	0	11,330,007	
평창군체육진흥기금	2,937,432	1,040,598	1,505,000	2,473,030	△405,000
평창군자활기금	251,470	251,535	30,000	473,005	
평창군고향사랑기금	0	240,000	0	240,000	240,000
평창군재난관리기금	971,875	813,053	800,000	984,928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153,965	25,051	15,845	163,171	△15,845
평창군식품진흥기금	129,723	32,649	36,384	125,968	△1,962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5,734,003	2,151,016	1,577,004	6,308,015	

※ 자료근거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IV. 검토결과

가. 기금운용 변경계획(총괄)

- 수입·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240백만원 증액된 총 26,222백만원이며
 - 수입은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에서 기타수입으로 240백만원원이 증가하였고,
 - 지출은 체육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서 각각 예치금을 감액하여 비융자성 사업과 기타지출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에서 예치금 24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기금운용 변경내역>

[단위:천원]

구분	계획액		기정 계획액		증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26,222,059	100.00%	25,982,059	100.00%	240,000	0.92%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739,688	52.40%	13,739,688	52.88%	0	0
평창군체육진흥기금	2,978,030	11.36%	2,978,030	11.46%	0	0
평창군자활기금	503,005	1.92%	503,005	1.94%	0	0
평창군고향사랑기금	240,000	0.92%	0	0%	240,000	순증
평창군재난관리기금	1,784,928	6.81%	1,784,928	6.87%	0	0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179,016	0.68%	179,016	0.69%	0	0
평창군식품진흥기금	162,372	0.62%	162,372	0.62%	0	0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6,635,020	25.30%	6,635,020	25.54%	0	0

나. 기금별 변경내역

□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올림픽체육과)

- 수입·지출계획은 2,97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변동없음.
 - ▶ 수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 ▶ 지출은 예치금 405백만원을 감액하여 비융자성 사업비인 체육진흥사업 “전국 태권도대회” 등에 40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체육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2,978,030	2,978,030	0	합 계	2,978,030	2,978,030	0
전 입 금	1,000,000	1,00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1,505,000	1,100,000	405,000
예탁금회수	1,000,000	1,000,000	0	기본경비	0	0	0
예치금회수	937,432	937,432	0	예탁금	0	0	0
이자수입	40,598	40,598	0	예치금	1,473,030	1,878,030	△405,000

□ 평창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세정과)

- 수입계획은 기타수입 240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40백만원임.

<고향사랑기금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240,000	0	240,000	합 계	240,000	0	240,000
기타수입	240,000	0	240,000	예치금	240,000	0	240,000

□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도시과)

- 수입·지출계획은 17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변동없음.
 - ▶ 수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 ▶ 지출은 예치금 16백만원을 감액하여 기타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정치현수막 우선계시대 확충사업) 1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옥외광고발전기금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79,016	179,016	0	합 계	179,016	179,016	0
예치금수회	153,965	153,965	0	예탁금	0	0	0
이자수입	1,975	1,975	0	예치금	163,171	179,016	△15,845
기타수입	23,076	23,076	0	기타지출	15,845	0	15,845

□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보건정책과)

○ 수입·지출계획은 16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변동없음.

▶ 수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 지출은 예치금 2백만원을 감액하여 기타지출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2022년도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지원 사업)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62,372	162,372	0	합 계	162,372	162,372	0
보조금	22,000	22,000	0	비용자성사업비	34,422	34,422	0
예치금수회	129,723	129,723	0	예탁금	0	0	0
이자수입	649	649	0	예치금	125,988	127,950	△1,962
기타수입	10,000	10,000	0	기타지출	1,962	0	1,962

다.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 금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기정계획 대비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의 예치금 순증(100%)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의 비용자성사업비 증액(36.8%)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의 예치금 감액(21.6%)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 2023년도부터 설치·운영되는 평창군고향사랑기금의 경우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에 따라
 - ▶ 「평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2022.11.18.일 제정하고 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 ▶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기금 사업비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 연도 기금총액은 연도말 기금총액(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연도말 조성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사료되나, 해당연도 기금총액을 다음연도 발생할 수입을 합산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전년도말 조성액 기준으로 편성하는 등 유리한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검토하는 것은 조례에 모호하게 규정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됩니다.

1)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2년도 말 조성액 기준 사업비 비율 51.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말 조성액 기준 52.3%

현재액 기준(2022년도 말 조성액+전입금) 38.2%

- ▶ 유사한 사례로 농산물유통과의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 제3항에도 “군수는 차액 지원을 할 경우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기획실의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4항에는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12월31일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에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편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은 2020년 이후 비융자성사업비인 체육진흥사업의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매년 감소하여 조성목표액 50억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0월 16일까지이므로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